언론인금고 규정

제정 2015. 5. 18
개정 2016. 2. 22
개정 2016. 12. 21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10. 19
개정 2019. 10. 16
개정 2020. 5. 20
개정 2022. 8. 17
개정 2023. 4. 19
개정 2024. 09. 25
개정 2025. 01. 22
개정 2025. 08.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 제3조 제17호, 제42조에 의한 언론인금고 운영·관리, 언론인금고 융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인금고”란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 등의 언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자금을 말한다.

2. “언론사”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나목,다목 및 제2호,「방송법」제2조제3호가목, 라목,「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단, 정치·경제·사회 등 시사에 대한

보도·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3. “언론인”이란 제2호 언론사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회원사”란 제16조에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언론사를 말한다.

5. “융자사업”이란 언론인 복지증진을 위해 언론인금고에서 언론인에게 제8조의 생활자금과 제12조의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 적격자”란 제3호의 언론인으로서 제5호의 융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융자 수령자”란 제8호의 융자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융자금”이란 제5호에 따라 융자 수령자에게 지급된 자금을 말한다.

9. “원리금”이란 제5호에 따라 융자된 자금 및 이자를 합한 자금을 말한다.

제2장 언론인금고 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등) ① 언론인금고 관리위원회(이하 “금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추천 각 1인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 각 1인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인

4.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② 금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금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임기 내 퇴임

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1.>

⑤ 금고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제출한다.<서식 1, 2> <신설 2019.10.16.>

⑦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10.16.>

⑧ 제⑦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해 위원장은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6.>

제4조(직무) 금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인금고 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의결
2. 언론인금고 자산 편입, 처분, 변경 등에 관한 심의·의결
3. 언론인금고 규정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4. 제2조제6호에 관한 융자 적격자 선정
5. 제16조 회원사 선정 및 자격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심의·의결
6. 생활·주택자금 융자 이율 변동에 관한 심의·의결
7. 기타 언론인금고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고관리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 2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제4조제4호의 사항을 매월 선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심사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6.>

⑤ 위원은 회의에 본인 직접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0.16.>

제6조(간사 선임 등) ① 금고관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언론인금고 융자사업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금고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금고관리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③ 의사록에는 회의 의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간사는 금고 시재, 대출 집행 및 회수 현황, 이자수입 현황, 미수금 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금고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9.>

제7조(융자심의)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제4조제4호에 따른 융자 적격자 심의를 위해 별도의 융자심의기준을 둔다. 융자 심의기준은 언론인금고 지침에 따른다.

② 융자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융자 적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결재로 대출 집행한 후 금고관리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16.>

제3장 생활자금 융자사업

제8조(융자용도) 생활자금 융자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계자금 : 학자금, 경·조사, 주택수선 등 가계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재해자금 : 질병치료, 재해복구, 기타 사고 등에 필요한 자금
3. 기타 금고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금

제9조(융자 적격자) 생활자금 융자 적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을 제외한 정사원 및 무기계약직
2. 1년 이상 근속한 자
3. 금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 자

제10조(1인당 융자 최고한도액 등) ① 융자 최고한도액은 1인당 2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2.03.16.>

② 융자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한다.

③ 융자금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담보 설정) 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보증보험 채권최고액은 100%로 한다.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융자 수령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03.16.>

② 기타 보증보험 관련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보증보험회사 간 협약서에 따른다.

③ 금고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소속 언론사의 연대보증으로 하되, 사유와 요건,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금 관련 법규에 의한다. <개정 2023.04.19>

제4장　주택자금 융자사업

제12조(융자용도) 주택자금 융자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22.03.16.>

2. <삭제 2022.03.16.>

3. 전세자금 :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

제13조(융자 적격자) 주택자금 융자 적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을 제외한 정사원 및 무기계약직

2. 2년 이상 근속한 자

3. <삭제 2022.03.16.>

4. 금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 자

5.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융자를 신청한 자(공동명의는 배우자로 한정) <개정 2019.10.16., 2022.03.16.>

6. 동일 주택에 대해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제14조(1인당 융자 최고한도액 등) ① 1인당 융자 최고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22.03.16.>

2. <삭제 2022.03.16.>

3. 전세자금 : 8천만 원. 단, 동일주택에 대해 재계약할 경우 증액된 보증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1., 2022.03.16.>

② 주택자금 대상 주택 및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22.03.16.>

2. 전세자금 : 임차계약서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임차보증금액 6억 원 이하 <개정 2016.2.22., 2022.3.16.>로 전용면적(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85㎡ 이하(2018. 10. 19 개정).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100㎡ 이하 <개정 2019.10.16.>

3. 전세자금 신청 시 오피스텔의 경우 주소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으로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 또는 주소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6.>

4. 주택자금은 무주택자에 한정하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매도계약서 첨부 시 무주택자로 본다. <개정 2017.12.27., 2022.3.16.>

5. <삭제 2022.03.16.>

6. <삭제 2022.03.16.>

7. <삭제 2022.03.16.>

8. 무허가건물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유주택자로 본다. <신설 2018.10.19.>

9. 제2호와 관련하여 월세임대차계약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른 환산율로 전세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9.10.16.>

③ 융자금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세자금 융자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2022.3.16.>

제15조(담보 설정 등) ① 주택자금 융자 담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22.03.16.>

2. 전세자금 : 보증보험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보험 채권최고액은 100%로 한다.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융자 수령자가 부담한다. 기타 보증보험 관련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보증보험회사 간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16., 2022.3.16.>

② 금고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소속 언론사의 연대보증으로 하되, 사유와 요건,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금 관련 법규에 의한다. <개정 2023.04.19>

③ <삭제 2022.03.16.>

④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부담한다. <개정 2017.12.27., 2022.3.16.>

⑤ <삭제 2022.03.16.>

제5장 융자 시행

제16조(회원사 선정 등)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언론사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회원사 자격 여부를 심의할 경우, 언론사의 신용등급·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원사 선정기준은 언론인금고지침으로 정한다.

③ 언론사는 제2항과 관련해 금고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회원사로 지정된 언론사는 금고관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을 준수한다.

⑤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 수령자의 보수지급일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기일을 정해야 한다.

⑥ 금고관리위원회는 회원사로 선정 된 후 다음 각호 경우 회원사 자격 유

지 여부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2년간 융자실적이 없는 회원사

2. 회원사 귀책사유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⑦ 금고관리위원회는 제6항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사에 다음 각 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1.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2.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3. 기타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⑧ 제7항과 관련해 회원사는 금고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 받은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2.21.>

⑨ 금고관리위원회는 제2조제2호 언론사 자격을 잃은 회원사에 대해 회원사 자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통보의무 등)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 수령자에게 자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체 없이 융자 수령자의 소속 언론사에게 융자 실행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매월 융자 수령자의 보수지급일 전까지 소속 언론사에 원리금 납부 예정 명세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내 언론인금고 회원사 전용 페이지에서의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④ 융자 수령자 소속 언론사는 융자 수령자 퇴직 또는 전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금고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융자 수령자 소속 언론사가 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경우 즉시 금고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융자 수령자는 금고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본인 의사 확인)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에 관해서는 직접 융자 적격자와 교섭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융자 적격자와 교섭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융자 수령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융자 적격자는 신청서류 등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9조(융자 제한)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사에 대해 융자 제한, 회원사 자격 유지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1. 원리금 연체가 있는 융자 수령자가 속한 회원사(원리금 상환 중 퇴사한 자가 연체한 경우도 포함) <개정 2018.10.19.>

2.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회원사

3.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심의 결정이 필요한 회원사 <신설 2016.12.21.>

4. 융자 수령자의 퇴사 사실을 기한 내에 미통보한 회원사 <신설 2017.12.27.>

5. 융자 수령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변제 요구 금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익월부터 3개월간 회원사에 대해 융자 제한 <신설 2018.10.19.>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적격자에 대해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자금 : 생활자금 원리금 상환 중인 자

2. 주택자금 :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 중인 자

3. 개인파산 선고 상태인 자

4.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

5. 채무 이행을 다하지 않은 자

6. 산전후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자

7. 융자 신청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신설 2017.12.27.>

③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 횟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자금 : 10회 <개정 2016.12.21., 2022.3.16.>

2. 주택자금 : 5회 <개정 2022.3.16.>

④ 제3항의 융자 횟수는 기존 융자 실적을 포함한다.

제20조(융자 이율 등) ①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1.>

② 융자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자금 ~~연3.45%~~연3.1% 단 융자 수령자 소속 회원사 연대보증의 경우 ~~연4.45%~~연4.1% <개정 2020.5.20., 2022.08.17., 2023.04.19., 2024.09.25. 2025.01.22., 2025.08.20.>

2. 주택자금 ~~연3.2%~~연2.85% 단 융자 수령자 소속 회원사 연대보증의 경우 ~~연4.2%~~연3.85% <개정 2020.5.20., 2022.08.17., 2023.04.19., 2024.09.25. 2025.01.22., 2025.08.20.>

③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금리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융자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융자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회하여 설정한다. 이때 변경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존 융자자들에게도 적용한다. 단, 금리변동은 직전 변동일로부터 최소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다. 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융자이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경과기간에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7.12.27., 2023.04.19., 2024.09.25.>

④ 제6조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매년 5월·11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시중은행 금리 변동사항을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12.21.>

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이율은 융자거래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이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금리로 체결된 약정에 한해 익월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9.23.>

⑦ <삭제 2022.3.16.>

제21조(이자계산 등) ①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에 대한 이자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손익과목인 해당융자과목 수입이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1일에 대한 이자는 융자금 연이율에 일수를 곱하여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이자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 금액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원리금이 기일에 입금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일의 익일부터 입금당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융자 수령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퇴사일을 통보하지 않고,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분할 상환한 경우, 언론인금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익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회원사에 대해서는 제19조 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제6장 융자 상환

제22조(상환 방법 등) ① 융자금 원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해 융자

취급일 익월부터 소정 납입기일에 징수한다. 단, 매회 할부금은 1,000원 단위로 하고 단수가 있을 때에는 최종 회차 할부원금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할부원금 상환 시에 후취한다.

③ 융자 수령자가 중도상환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회원사 담당자 및 언론인금고 담당자와 협의 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④ 회원사는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납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무급 육아휴직 중인 융자 수령자에 한해 휴직기간 동안 1자녀 당 최대 1년간 원리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다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19.10.16., 2022.3.16.>

⑥ 융자금 상환 또는 회수의 경우 회수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⑦ 원금상환 중 일부상환 시, 월 약정원금은 동일하며, 융자기간이 단축된다. <신설 2017.12.27.>

⑧ 질병휴직, 간병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무급휴직 중인 융자 수령자에 한해 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3.16.>

⑨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휴직 완료 후 3개월 내에 일시 납부한다. 단, 융자 수령자는 휴직 전 금고관리위원회에 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 수령 후 1회 이상 상환한 자여야 한다. <신설 2022.3.16.>

제23조(연체) ① 연체이율은 대출금리에 연 3%p를 가산하며, 상환액(원금+정상이자)에 대해 부과한다. <개정 2016.12.21., 2024.09.25.>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근저당 및 연대보증으로 담보를 설정한 융자 수령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보증보험 융자 수령자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과 보증보험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④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으로 융자 수령자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⑤ 4항에 의해 융자금 변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융자금 즉시 상환) ① 융자 수령자 소속 언론사는 융자 수령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서 융자금 잔액을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대보증을 담보로 한 융자 수령자의 퇴직금 중산 정산 시에도 융자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2.3.16., 2023.04.19>

② <삭제 2022.3.16.>

③ 다음 각 호의 융자 수령자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융자 수령자가 60일간 계속 연체 시

2. 융자 수령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권변제요구금지명령 결정문 수령 후 도래하는 약정일에 즉시 상실 <신설 2022.3.16.>

제25조(융자 원리금 승계) ① 융자수령자는 이직 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해야한다. <개정 2023.04.19>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수령자가 다른 회원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융자담보가 보증보험 또는 근저당설정일 경우에 한해 원리금 납부를 승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③ 승계는 퇴사 후 30일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16.>

부 칙

1조. 이 규정 외 사항은 금고관리위원회 지침으로 제정한다.

2조. 이 규정은 금고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단, 제20조 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까지 체결된 약정의 융자이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3조. 이 규정 효력 발생 시 기존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 규정, 생활자금 융자규정, 주택자금 융자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4조. 단, 2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개정된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표준(안)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서식2】 직무윤리 서약서 표준(안)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언론인금고 융자시행지침

제정 2010. 04. 01.
개정 2012. 05. 24.
개정 2013. 05. 01.
개정 2014. 03. 01.
개정 2015. 05. 18.
개정 2017. 1. 1.
개정 2017. 12. 13.
개정 2018. 10. 19.
개정 2019. 10. 16.
개정 2020. 01. 22.
개정 2020. 05. 20.
개정 2020. 05. 26.
개정 2020. 07. 07.
개정 2022. 04. 05.
개정 2022. 08. 18.
개정 2023. 04. 27.
개정 2024. 09. 30.
개정 2025. 01. 24.
개정 2025. 08.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인금고 규정 부칙 1조에 따라 언론인금고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사 선정) ① 회원사 가입을 희망하는 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관청에 신고한 언론사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3.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세증명서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공증)
7. 회사소개서 1부(임금체계표 포함)
8.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② 회원사 가입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사 신청일 기준 첫 보도일로부터 만 3년이 초과한 언론사로 최근 3년간 월급 체납이 없는 언론사 <개정 2019.10.16.>
2. 회원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이 없는 언론사
3. 회원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없는 언론사

③ 금고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사에 한 해 언론사의 재무상태·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회원사로 선정된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별첨 3 언론인금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회원사는 협약서 체결 시 융자서류 대조용으로 최고책임자 및 경리책임자의 인감 및 서명감을 갖춘 <별지 제3호 서식 인감필적지>를 제출한다. <개정 2020.01.22.>

제3조(융자금 신청) ① 융자금 신청 시 융자금 한도액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신청한다.

②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작성 시 회사 법인 인감 날인 후 제출한다. 단,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4.27.>

③ 금고관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인감필적지>와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신청서> 상 날인된 법인 인감 및 회사 경리책임자 인감이 상이할 경우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1.22.>

④ 신청 서류의 신청금액은 한글을 병기하여야 하며, 신청금액을 정정한 경우는 융자금을 징구할 수 없다. <개정 2017.01.01.>

제4조(융자 상환기간) ①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자금은 3년 이내 <개정 2017.01.01.>

2. 주택자금은 2,000만 원 이하는 3년 이내,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5년 이내, 4,0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6년 이내, 5,000만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7년 이내, 6,0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0년 이내<개정 2018.10.19., 2023.04.27>

3. 삭제 <삭제 2018.10.19.>

② 융자 상환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규정에 따른 융자 수령자의 정년이내로 한다.

제5조(융자 즉시 상환)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 수령자는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

1. 삭제 <개정 2022.04.05.>

2.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개정 2022.04.05.>

4. 삭제 <개정 2022.04.05.>

5. 융자 수령자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채권침해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융자 수령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내에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2.04.05.>

제6조(주택자금 신청기간) ① 삭제 <개정 2022.04.05.>

② 삭제 <개정 2022.04.05.>

③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 이전 2개월 이내, 전입신고일 또는 잔금일 중 이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일주택에 대해 재계약 시 잔금일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단, 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

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7조(담보인정 비율) ① 전세자금 부채 비율은 전세보증금의 70%로 제한한다. <개정 2018.10.19., 2022.04.05.>

② 이 경우 부채는 언론인금고 부채에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0.16., 2022.04.05.>

제8조(생활자금 융자 심의) ①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별첨 1 언론인금고 융자 심의 기준>에 따라 생활자금 신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1.22.>

②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심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생활자금을 신청한 융자 적격자는 동일 회차에 주택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주택자금 융자심의) ①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별첨 1 언론인금고 융자심의기준>에 따라 주택자금 신청을 심의한다.

② 삭제 <개정 2022.04.05.>

③ 주택자금을 신청한 융자 적격자는 동일 회차에 생활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보증보험) ① 융자 수령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융자금 지급 시 개별 공제하여 보증보험사에 대납한다. <개정 2022.04.05.>

② 융자금 중도상환 시 보험료 환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증보험사에 대리 청구한다. <개정 2022.04.05.>

③ 생활자금 보증보험 유효 한도는 특별 융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2,500만원까지로 한다. <신설 2022.04.05.>

제11조(서류 제출 등) ①융자를 희망하는 융자 적격자 <별첨 2> 신청서류를 갖춰 소속 회원사에 제출하고 회원사는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 외에도 융자 심의·결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융자 적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제한) 원리금 연체가 있는 회원사의 경우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최근 1년간 6회 이상 연체 발생 시 3개월간 신규 융자를 중단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12회 이상 연체 발생 시 회원사 자격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7.12.13., 개정 2022.04.05.>

제13조(특별 융자금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등의 사유로 최대 500만원까지 특별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특별 융자금의 융자 적격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외의 언론인도 포함한다. 지원 조건 등은 금고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별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7., 2022.04.05.>

제14조(시행세칙) 본 시행지침 이외의 사항은 언론인금고 융자규정과 동일하며, 필요한 세칙은 별도 이사장이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주택자금 이율적용은 2013년 5월 원리금 회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재단은 지침 제2조 4항에 의거 2015년 5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사와 언론인금고 업무협약서를 소급 체결한다.)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기존의 임차계약서 원본은 모두 반환한다.)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특별 융자금 등)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언론인금고 융자 심의 기준 <개정 2023.04.27.>

구 분	생활자금	주택자금
1 순위	적은 융자 횟수	다자녀 부양 (2인 이상)
2 순위	보증보험 제출자	적은 융자 횟수
3 순위	장기 근속자	보증보험 제출자
4 순위	증빙서류 제출자 (의료비, 학자금 등)	저액 임차보증금
5 순위	-	장기 근속자

<별첨 2> 제출 서류 <개정 2023.04.27.>

제 출 서 류

구 분	주택자금	비 고
공통	융자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융자 거래약정서 (별지 서식 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부)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재계약 시) 계약금영수증 사본 또는 계좌이체확인서(5%이상)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시(예정 포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내토지찾기서비스) ※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체서류로 사용검사필증 및 임대인의 공급계약서로 제출 가능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내토지찾기 서비스)는 시·구청 토지과(각 기관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음)에서 발급. 본인, 배우자, 세대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은 모두 제출(인터넷 캡처 인쇄본 제출 불가)

<별첨 3> 언론인금고 업무협약서 <개정 2022.04.05., 2023.04.27., 2024.09.30.>

언론인금고 업무협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언론인금고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회원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재단의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성립 등) 본 협약은 재단과 회원사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조(회원사의 의무) ① 회원사는 주소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인감 변경, 경리책임자 인감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에 서면으로 변경 통지해야 한다. (인감필적지 별지 1호)

② 회원사는 연대보증으로 담보선택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 융자 신청일 기준 퇴직금 추계액을 재단에 제출해야하며, 사유와 요건,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금 관련 법규에 의한다.

③ 회원사는 연대보증으로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금액 전액에 대해 보증하고, 어떤 경우라도 채무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단,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무 보증 시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한다.

④ 회원사는 무급 휴직으로 인해 할부 원리금 공제가 불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융자금 수령 후 1회 이상 상환한 자에 한한다.

⑤ 회원사는 매월 채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할부 원리금 공제와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원리금에 대해 급여공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개별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회원사는 융자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연대보증으로 신청한 채무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융자 수령자 융자금 잔액을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한다.

⑧ 회원사는 채무자가 퇴직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재단에 통보한다.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회원사가 책임을 진다.

⑨ 회원사가 파산 및 법정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등 융자금 채권 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채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는 금고관리위원회에 즉시 사유를 통

보한다.

제4조(융자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사에 대해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사의 융자 수령자가 재직 또는 퇴직 후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원리금 상환 중 퇴사한 자가 연체한 경우도 포함)
2. 회원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② 재단은 채무 이행을 다하지 않은 융자신청자에 대해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융자 통보) ①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융자 수령자에게 자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체없이 융자 수령자의 소속 언론사에게 융자 실행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관리위원회는 매월 융자 수령자의 보수 지급일 전에 소속 언론사에 원리금 납부 예정 명세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내 언론인금고 회원사 전용 페이지에서의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약정일 등) ① 재단과 회원사는 매월 ()일을 약정일로 한다.

② 재단은 회원사가 약정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월 상환액(원금+정상이자)의 연체이자(대출금리+3%p)를 부과한다. 를 부과한다.

③ 회원사는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납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 원리금 승계) 회원사는 다른 회원사에서 이직한 융자 수령자의 융자 원리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단, 융자 수령자의 전 회원사의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회원사로 입사 처리가 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한 관할은 회원사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한다.

제9조(제 해석)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재단 정관, 언론인금고 규정 및 지침이 해석기준이 된다.

재단과 회원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하

기로 한다.

20 . . .

(특약사항) 본 협약서는 재단과 회원사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협약 이후 협약서가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협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이사장 (인)

【회원사】
사 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04.05., 2023.04.27.>

(생활,주택) 융자 신청서

재단 작성란	
접수 일자	

☐ **주택자금 신청자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 내용	①융자 종류	생활자금	☐ 가계 자금 ☐ 재해 자금(재해복구, 치료비 등) ※증빙 첨부 시 우선순위		
		주택자금	☐ 전세금	②임차보증금	원
	③ 신청 금액		금 원 (₩)		
	④상환 방법	생활자금	☐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자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년 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⑤ 융자담보선택		☐ 보증보험 ☐ 연대보증(퇴직금 추계액 :)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⑥주소																										
	전화	회사			휴대폰									E-mail													
직장 정보	직장명				부서									직위													
	직종구분	☐ 기자 ☐ 아나운서 ☐ PD ☐ 제작·업무												년근로소득													
	고용형태	☐ 정규직 ☐ 기타 ()												입사일													

주거 현황	현 거주지	☐ 본인소유 ☐ 배우자소유 ☐ 부부공동 소유 ☐ 가족소유 ☐ 전세 ☐ 월세 ☐ 기타			
	가족현황	☐ 부 ☐ 모 ☐ 배우자 ☐ 자녀(명) ☐ 없음		⑦현 거주지 전입일	
	⑧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 1주택 ☐ 다주택	⑨전용면적	㎡	⑩잔금지급일
임대차 현황	⑪부동산 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 ☐ 다세대/연립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 기타			
	⑫물건지 주소				
	⑬금융기관 대출	☐ 대출소유/예정(은행 원) ☐ 없음			

⑭입금은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본인 및 경리책임자는 위 융자신청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단이 융자승인을 취소하거나 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융자신청이 심사결과 “부결”되더라도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공제와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퇴직금(연대보증 시 중간정산 포함) 지급 시 대출금 잔액의 공제와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융자신청서 및 거래약정서는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유	경리책임자

⑮ 신청인(본인) (서명)

회 사 (인)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08.18., 2023.04.27., 2024.09.30., 2025.01.24., 2025.08.25.>

융자 거래 약정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앞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아래 조건에 따라 융자거래를 함에 있어 귀 재단의 (생활, 주택) 자금규정에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채무자)		회 사	
성명	(서명)	경리 책임자	(인)
주소		소속사	(인)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table>
<tr><td rowspan="2">융자종류</td><td>생활자금</td><td colspan="5">□ 가계 자금 □ 재해 자금(재해복구, 치료비 등) ※증빙 첨부 시 우선순위</td></tr>
<tr><td>주택자금</td><td colspan="5">□ 전세금</td></tr>
<tr><td>융자금액</td><td colspan="6">금 원 (₩)</td></tr>
<tr><td rowspan="2">융자기간 및 상환방법</td><td>생활자금</td><td colspan="5">□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td></tr>
<tr><td>주택자금</td><td colspan="5">□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년 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td></tr>
<tr><td rowspan="4">융 자
이자율</td><td rowspan="2">생활</td><td>□ 보증보험(연 3.1%)</td><td rowspan="4">연 체
이자율</td><td rowspan="4">연 대출금리 + 3%p</td><td rowspan="4">상환일</td><td rowspan="4">회원사
약정일</td></tr>
<tr><td>□ 연대보증(연 4.1%)</td></tr>
<tr><td rowspan="2">주택</td><td>□ 보증보험(연 2.85%)</td></tr>
<tr><td>□ 연대보증(연 3.85%)</td></tr>
</table>

제2조 (담보 제공)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증권 제출, 회사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제3조 (융자 즉시 상환) 다음의 경우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

① 퇴직 또는 연대보증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②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등 기타 귀 재단에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채권침해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채무자의 퇴직 시 7일 이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②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공제와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회사는 퇴직금(연대보증 시 중간정산 포함) 지급 시 대출금 잔액의 공제와 납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채무자의 채무금액 전액을 보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연대하여 융자금액의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단, 보증보험증권 제출 설정으로 채무를 보증 시,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5조 (관할법원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 건에 관한 소송은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도 이의가 없도록 한다.

제6조 (융자 이율) 언론인금고관리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시중은행 금리 등을 감안해 융자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금리변동은 직전 변동일로부터 최소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둔다. 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융자이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경과기간에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사 융자 제한)

① 융자 수령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변제 요구 금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익월부터 3개월 간 회원사에 대해 융자가 제한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감필적지 <개정 2022.04.05.>

대부용인감필적지

서명(대표)	법 인 인 감	서명(경리책임자)	인 감

성명				
	대표		회사명	
	경리책임자		주소	